

##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3항중 “내무국장” 을 “문화관광국장” 으로,

“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위원장 과”  
를 “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과 지방문화재위원회위원 및”  
으로 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조례의개정)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8조중 “내무국장” 을 “문화관광국장” 으로 한다